農産物 都賣市場의 適正料率體系 分析

전 창 곤*

1. 序論
2. 都賣市場 諸料率 運用現況
3. 都賣市場 料率水準 分析
4. 要約 및 結論

1. 序 論

農水産物 都賣市場의 公益的 중요성을 인식한 政府와 大都市를 비롯한 地方自治團體들은 1980년대 중반 이후 公共投資에 의한 도매시장을 건설하고 유통개선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1985년 公共投資로 건설된 우리 나라 최초의 法定公營都賣市場인 서울 가락동 農水産物都賣市場이 개장된 후 계속하여 대도시를 중심으로 도매시장이 건설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건설이 진행중에 있다. 현재 전국에 開場중인 法定公營都賣市場數는 서울을 포함하여 9개에 이르고 있다.

이들 公營都賣市場에서는 기능을 달리하는 각종 流通業者들이 참여하여 서로 有機的이고 體系的인 관계하에 그들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都賣市場의 諸機能은 원활히 수행되고 있다. 이들 각종 流通參與者들은 都賣市場機能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각종 施設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에 대한 反對給付로서 施設과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으로부터 각종 手數料나 使用料를 받는다. 이러한 手數料와 使用料의 料率水準은 각 유통주체의 경영상태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의 量과 質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즉, 지나치게 높은 料率水準은 한편에는 지나친 費用負擔을 초래하는 반면 다른 편에서는 부당한 利得을 취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手數料와 使用料를 포함한 諸料率의 合理的인 水準決定은 都賣市場運營 效率化의 기본적 조건이 된다.

현실적으로 도매시장의 각종 料率에 대한 支拂者와 受取者간에 料率調整을 둘러싼 상반된 요구가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指定都賣法人의 경우 上場手數料收入에 의해서도 높은 營業利益率을 실현하고 있는 반면 生産出荷者의 경우 委託上場手數料외에 荷

* 책임연구원.

表 1 **都賣市場의 諸料率과 法定限度**

區 分		支拂者	受取者	法定料率	關聯法規
使用料	都賣市場使用料	指定都賣法人	管理事務所	去來額의 0.5%	法35條
	施設使用料	施設使用者	管理事務所	財産價額 5.0%	
手數料	委託上場手數料	出 荷 者	指定都賣法人	去來額 2~7%	法35條
	仲介手數料	購 入 者	仲 買 人	去來額의 4.0%	
奬勵金	出荷奬勵金	指定都賣法人	出 荷 者	去來額 1~2%	市道條例
	仲買人奬勵金	指定都賣法人	仲 買 人	去來額 1~2%	市道條例
其 他	上·下車費	出 荷 者	作 業 者	單位當一定額	當事者間 合 意
	淸掃費	仲 買 人	管理事務所	單位當一定額	
	容器使用料	出 荷 者	指定都賣法人	容器當一定額	
	作業費	出 荷 者	作 業 者	時間·日當賃金	

* 關聯法規는 1993.6.11 法律 第4554號로 公布된 改正農安法임.

役費 부담이라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어 現料率水準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諸料率水準의 조정은 支拂者와 受取者간에 서로의 이해관계가 상반되기 때문에 諸料率體系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정책적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현재 농수산물 公營都賣市場에서 授受되는 諸料率體系의 현황과 運用實態를 파악하고 도매시장의 핵심적인 요율이라고 할 수 있는 委託上場手數料率을 중심으로 적정 요율체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2. 都賣市場 諸料率 運用現況

都賣市場에서 발생하는 諸料率에는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크게 手數料, 使用料, 奬勵金 및 荷役費 등을 포함한 其他料率이 있다. 먼저 手數料의 경우에는 委託上場手數料와 仲介手數料가 있다. 委託上場手數料는 指定都賣人이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出荷者로부터 받는 去來額의 일정비율로서 農安法에 의해 최고 1천분의 70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仲介手數料는 仲買人이 都賣市場에서 농수산물의 매수를 仲介한 경우에 이를 매수한 자에게 징수하는 去來額의 一定率로서 최고한도는 1천분의 40이다. 委託上場手數料는 사실상 도매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料率로서 각종 유통주체들의 收入과 支出水準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委託上場手數料는 출하자의 受取價格 수준뿐만 아니라 도매시장 운영주체인 指定都賣法人의 경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다음으로 使用料의 경우 크게 都賣市場使用料와 施設使用料가 있다. 都賣市場使用料는 開設者가 指定都賣法人으로부터 도매시장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징수하는 것으로, 指定都賣人의 입장에서 보면 市場使用에 대한 댓가로 납부하는 금액

表 2 **都賣市場의 手數料 및 使用料率 現況**

區 分	徵收者	負擔者	料率 (%)			備 考
			法定料率	實際料率	料率範圍	
都賣市場使用料	개설자	지 정 도매법인	0.5	청과: 0.36 수산: 0.49	0.2 - 0.5 0.4 - 0.5	去來金額, 賣場面積
委託上場手數料	지 정 도매법인	출하자	청과: 7.0 수산: 6.0 축산: 3.5 양곡: 2.0 화훼: 7.0 약용: 5.0	6.57 4.36 소: 2.26 돼지:2.56 2.00 7.00 3.00	3.0 - 7.0 1.5 - 6.0 1.5 - 3.0 1.5 - 3.0 - - 3.00	去來金額基準
仲 介 手 數 料	중매인	매수자	4.0	청과: 3.25 수산: 2.60 소 : 1.34 돼지: 1.69	0.4 - 5.0 0.4 - 4.0 1.0 - 1.6 1.5 - 1.9	去來金額基準
施 設 使 用 料	개설자	시 설 사용자	5.0	-	-	財産價額基準

* 靑果部類, 水産部類 및 畜産部類의 實際料率은 각각 전국의 40개, 14개,8개 指定都賣法人의 平均値이며, 요율범위는 最低料率과 最高料率의 範圍임.

이며, 최고한도는 총거래금액의 1천분의 50이다. 그리고 시설사용료는 개설자가 도매시장에 부수되는 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징수받는 賃貸料이며, 農安法에 의한 최고한도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50이다.

한편 도매시장에서는 手數料와 使用料 외에 유통참여자들간에 授受되는 荷役費, 淸掃費, 容器使用料 등의 명목으로 여러 가지 비용을 징수하고 있으나, 사실상 荷役費를 제외한 비용은 없거나 또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실제로 荷役費의 경우 法人에 따라 全體去來額의 약 1.0~1.4%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1] 委託上場手數料 부담과 함께 생산출하자의 과중한 料率負擔 要因이 되어 수취가격 수준의 저하는 물론 도매시장이용의 불만요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도매시장에는 이 밖에도 指定都賣法人이 출하자로부터 징수받아 출하자와 중매인에게 지급하는 出荷奬勵金과 仲買人奬勵金이 있으나 農安法上의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시행효과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은 실정이다.

이들 각종 手數料와 使用料의 法定料率과 實際料率은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차이가 있다. 都賣市場 使用料는 法定料率의 최고한도를 0.5%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요율은 청과와 수산부류가 각각 0.36%와 0.49%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의 각 지정도매

[1] 성배영 외, 「農産物 都賣市場의 效率的 去來方式과 適正料率體系에 관한 硏究」, 1993

인별 요율 범위도 청과 0.2~0.5%, 수산 0.4~0.5%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出荷者가 指定都賣法人에게 지불하는 委託上場手數料의 실제 요율은 양곡과 화훼부류를 제외한 모든 부류에서 法定料率보다 1~2% 낮게 형성되고 있으며, 요율 범위 또한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買收者가 仲買人에게 지불하는 仲介手數料의 실제 요율은 청과, 수산, 축산부류가 각각 약 3.25%, 2.60%, 1.52%로 나타나고 있으며, 각 지정도매인들의 최저요율과 최고요율 범위는 역시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출하장려금과 중매인장려금의 지정도매인별 평균요율은 1.0%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부류별로 큰 차이가 나고 있다. 출하장려금의 경우 청과와 수산부류의 요율은 각각 0.93%와 0.19%이며, 중매인장려금의 경우 청과와 수산부류의 요율은 각각 0.96%와 0.36%로 나타나고 있다.[2]

3. 都賣市場 料率水準 分析

3.1. 分析方法 및 內容

委託上場手數料率의 분석은 公營都賣市場 指定都賣法人의 각종 財務資料를 이용하여 財務資料分析 중 均衡分析의 일종인 損益分岐點分析을 통해 이루어졌다. 균형분석은 財務諸表의 比率分析과는 달리 기업의 收益과 費用 또는 收入과 支出의 균형 상태를 분석하는 것으로 손익분기점 분석과 자금흐름분석 등이 있다.

損益分岐點分析은 기업의 賣出額, 費用, 利益들이 서로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를 규명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損益分岐點은 기업의 생산 및 판매활동에서 總收益과 總費用이 같아지는 점 즉 純利益이 0이 되는 점을 말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賣出額과 營業費用이 같아지는 점 즉 營業利益이 0이 되는 점을 損益分岐點이라고 정의한다. 왜냐하면 여기서의 분석대상이 일반기업이 아닌 농산물의 지정도매법인이기 때문이다. 도매시장 지정도매법인의 總收益은 賣出額과 거의 일치하며, 賣出額은 委託上場手數料率에 의하여 결정된다. 또한 지정도매인의 總費用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는 營業費用이기 때문에 營業利益의 크기가 純利益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기업의 營業活動에는 반드시 매출액이나 매출량에 관계없이 固定營業費用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출액이 어느 수준 이상 되지 않으면 손실이 발생한다. 즉 지정도매법인의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되어야 총영업비용을 보상하고 영업이익이 발생하는가 하는 것과 이 때 上場手數料率과 매출량은 어느 수준이 되는가를 찾는 것이 손익분기점 분석의 내용이다. 이것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지정도매법인의 영업비용을 固定費와 變動費로 구분하여 검토해야 된다.

損益分岐點分析에는 賣出量 또는 賣出額의 두 가지로 분석될 수 있는데, 이용자료의 제약성으로 여기서는 賣出額의 분석을 시도하였다. 賣出額의 損益分岐點을 보면 총매출액을 TR, 변동영업비를 VC, 제품 단위당 변동비를 V, 단위당 제품가격을 P, 매출량

[2] 성배영 외, 「農産物 都賣市場의 效率的 去來方式과 適正料率體系에 관한 硏究」, 1993.

을 Q,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TR^*이라 하고 이 때의 변동영업비를 VC^*라 하면 다음과 같다.

$$(1)\quad TR^* = FC + VC^*$$
$$VC^* = \frac{VC^*}{TR^*} \cdot TR^*$$
$$\frac{VC^*}{TR^*} = \frac{VC}{TR}$$

이므로[3]

$$(2)\quad VC^* = \frac{VC^*}{TR^*} \cdot TR^* = \frac{VC}{TR} \cdot TR^*$$

식 (1)과 식 (2)에 의하여

$$(3)\quad TR^* = \frac{FC}{1 - \frac{VC}{TR}}$$
$$\frac{VC}{TR} = \frac{V \cdot Q}{P \cdot Q} = \frac{V}{P}$$
$$(4)\quad \therefore\ TR^* = \frac{FC}{1 - \frac{V}{P}}$$

여기서 (1-V/P)는 貢獻利益率이 된다.

그리고 指定都賣法人의 營業目標는 營業利益이 0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정도매인의 目標利益別로 손익분기점 매출액과 그 때의 上場手數料率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目標利益(TP)은 총매출액의 일정률로 하였으며, 이 경우 上場手數料率은 어느 수준이 되는가를 분석하였다.

$$(5)\quad TR^* = FC + \frac{TP}{1 - \frac{V}{P}}$$

분석대상 지정도매법인은 공영도매시장의 10개 청과물 지정도매법인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소재 4개, 지방소재 6개이다. 그리고 공영도매시장의 수산물 지정도매법인은 청과물에 비해 그 수가 훨씬 적을 뿐만 아니라 자료수집의 제약으로 제외되었으며, 축산물은 공영도매시장이 없기 때문에 역시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지정도매법인의 재무제표이며, 그 중 손익계산서가 주로 이용되었다. 그런데 각 지정도매법인의 재무제표가 통일된 양식과 항목 구분하에 작성되어 있지 않아 영업비용의 고정비와 변동비 구분에 문제가 있었다. 이 경우 각 지정도매법인에 문의하여 비용항목 내용을 파악하여 임의로 구분하였다.

3.2. 損益分岐點 및 料率分析

청과물 指定都賣法人의 損益分岐點 및 料率分析結果는 <표 3>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다. 여기서 보면 이들 지정도매법인의 총매출액은 대구 B의 821백만원에서 서울 C의 9,969백만원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며, 규모별로 매우 큰 차이가 나고 있다. 10개 지정도매법인의 평균 총매출액은 4,853백만원이다. 분석 결과 損益分岐點 賣出額은 울산 A의 601백만원에서 서울 D의 7,970백만원에 걸쳐 있으며, 평균은 3,404백만원이다. 현재의 총매출액에 대한 손익분기점 매출액의 비율인 損益分岐點率은 평균 70.14%이며, 지정도매법인에 따라 울산 A의 56.13%에서 청주 A의 93.70%에 걸쳐 있다. 이것

[3] VC^*/TR^*는 손익분기점상에서의 변동비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지만, 그 외의 점에서도 매출단가(P)나 단위당 변동비(V)가 판매량(Q) 또는 생산량에 관계 없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일반적으로 매출액에서 변동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같기 때문이다.

表 3 青果物 指定都賣法人의 損益分岐點 및 手數料率分析, 1992

단위: 百萬원,千톤, %

區 分	서울 A	서울 B	서울 C	서울 D	대전 A	울산 A	청주 A	대구 A	대구 B	광주 A	平 均
總賣出額	9,476	8,962	9,812	9,969	3,559	1,071	1,483	1,588	821	1,786	4,853
損益分岐點 賣出額	5,378	6,073	6,486	7,970	2,938	601	1,390	1,095	689	1,421	3,404
損益分岐點率	56.75	67.76	66.10	79.95	82.53	56.13	93.70	68.91	83.87	79.59	70.14
現行平均 手數料率[1]	4.79	4.61	4.88	4.99	6.00	7.00	6.00	7.00	7.00	7.00	5.92
損益分岐點 手數料率[2]	2.72	3.12	3.23	3.99	4.95	3.93	5.63	4.83	5.87	5.57	4.38
總去來量	417.3	640.5	318.5	562.2	133.3	24.9	62.6	39.0	135.5	52.0	238.6
損益分岐點 去來量[3]	236.8	434.0	210.5	449.5	110.0	14.0	58.7	26.9	113.6	41.4	167.3
委託上場 手數料率	6.00	6.00	6.00	6.00	6.00	7.00	6.00	7.00	7.00	7.00	56.40
損益分岐點 手數料率[4]	2.17	2.39	2.63	3.32	4.95	3.93	5.63	4.83	5.87	5.57	4.13
上場競賣量	187.1	259.9	249.9	287.9	133.3	24.9	62.6	39.0	135.5	52.0	143.2
損益分岐點 去來量	150.9	255.1	139.6	311.7	110.0	14.0	58.7	26.9	113.6	41.4	122.1

1) 委託上場手數料와 記錄上場手數料의 平均値임.
2) 각 指定都賣法人의 현재의 去來物量하에서의 損益分岐點 手數料率임.
3) 현행 平均手數料率하에서의 損益分岐點 去來物量임.
4) 전체 搬入物量이 전부 上場競賣되고 記錄上場物量이 없을 경우의 損益分岐點 手數料率임.

은 현재의 총거래액과 手數料하에서는 營業利益 측면에서 상당한 收益性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지정도매법인에 따라 손익분기점률에 큰 차이가 나고 있는데, 대체로 매출액 규모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즉 매출액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매우 많은 서울 소재 지정도매법인의 경우 損益分岐點率이 낮은 경향이 있으며, 매출규모가 적을 수록 높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반드시 總賣出額에 따라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청과물 지정도매법인들의 현재의 上場手數料率은 서울 B의 4.61%에서 7.00%까지로 나타나고 있으며, 평균 5.92%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현행 法定最高限度인 7.00%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서울 소재 지정도매법인들의 料率이 5.00%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委託上場手數料率과 記錄上場手數料率의 평균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와 동일한 去來量 및 賣出額하에서 損益分岐點 賣出額을 충당할 수 있는 損益分岐點 手數料率은 서울 A의 2.72%에서 대구 B의 5.87%에 걸쳐 있으며, 평균 4.38%이다. 즉, 지정도매법인별로는 큰 차이

는 있으나 평균 약 4.38%의 上場手數料率이면 損益分岐點 賣出額과 동일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損益分岐點 手數料率은 지정도매인에 따라 法定料率과 약 1.13%에서 4.28%의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평균 약 2.62%의 차이가 나고 있다. 이것은 지정도매법인의 영업목표가 損益分岐點 賣出額 실현에 있다고 가정한다면 上場手數料를 法定料率 7.00%에서 2.62% 인하해도 된다는 것이며, 현행 평균 수수료율 5.92%에서 1.54% 인하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과물 지정도매법인의 上場手數料率은 현재 일부 도매시장에서 上場競賣物量에 대한 手數料率과 記錄上場物量에 대한 手數料率로 나누어져 있어 平均上場手數料率이 5.92%가 되고 있다. 그러나 만약 현재 도매시장에 반입되어 記錄上場되는 물량이 전부 上場競賣物量으로 전환되면 현재 지정도매법인이 받는 手數料率은 상승될 것이며, 損益分岐點 手數料率은 낮아질 것이다. 실제로 上場競賣品이 지정고시되어 上場競賣와 記錄上場으로 나누어져 있는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의 경우 각 지정도매법인의 전체거래물량 중 記錄上場物量比率은 평균 약 54%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記錄上場物量이 전부 上場競賣되어 上場手數料率도 현재의 上場競賣物量에 대해 받는 手數料率과 동일하게 된다면 平均上場手數料率은 현재의 5.92%에서 6.40%로 상승된다. 이 때의 평균 損益分岐點 手數料率은 현재의 손익분기점 수수료율 4.38%에서 더 인하되어 4.13%가 된다. 그러나 각 지정도매법인별로는 서울 A의 2.17%에서 대구 B의 5.87에 이르기까지 매우 많은 차이가 나고 있다.

이상에서 청과물 지정도매법인의 경우 각 지정도매법인별로는 많은 차이가 나고 있지만 분석대상 10개 法人의 평균 損益分岐點率은 70.14%로 나타나 현재의 去來物量이 損益分岐點物量 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의 損益分岐點 手數料率 현재의 평균 5.92%에서 1.54가 적은 4.38%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현상태에서의 청과물 지정도매인법인은 거래량과 매출액이 損益分岐點을 초과하여 일정한 營業利益을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上場手數料率의 조정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指定都賣法人의 營業目標가 營業利益을 0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적정 營業利益率을 추구해야 한다. 그런데 적정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되어야 된다는 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각 지정도매법인별로 영업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는 정하기가 어렵다. 여기서는 지정도매법인의 目標利益率을 현재의 總賣出額의 일정 비율로 임의로 정하고 目標利益率別 損益分岐點率과 損益分岐點 手數料率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살펴보았다.

청과물 지정도매법인의 目標利益率別 損益分岐點率과 手數料率은 <표 4>에서 보는 것과 같다. 여기서 보면 각 지정도매법인이 그들의 目標利益을 總賣出額의 5%로 할 경우 損益分岐點率은 청주 A의 63.09%부터 청주 A의 104.27%까지 있으나 청주 A를 제외한 모든 지정도매법인의 손익분기점률이 90% 이하로 나타나고 있으며, 평균 약 81.4%로 되고 있다. 이 때의 損益分岐點 手數料率은 서울 A의 3.89%에서 청주 A의 6.25%

表 4 青果物 指定都賣法人의 目標利益率別 損益分岐點과 手數料率

區 分		總賣出額 중 營業利益率 比重*			
		5%	10%	15%	20%
서 울 A	損益分岐點率	64.81	72.87	80.93	89.00
	損益分岐點手數料率	3.89	4.37	4.86	5.34
서 울 B	損益分岐點率	76.00	84.25	92.49	100.73
	損益分岐點手數料率	4.56	5.05	5.55	6.04
서 울 C	損益分岐點率	74.16	82.21	90.28	98.34
	損益分岐點手數料率	4.45	4.93	5.42	5.90
서 울 D	損益分岐點率	89.17	98.39	107.61	116.84
	損益分岐點手數料率	5.35	5.90	6.46	7.01
대 구 A	損益分岐點率	76.70	84.49	92.27	100.07
	損益分岐點手數料率	5.37	5.92	6.46	7.00
대 구 B	損益分岐點率	87.03	95.65	104.26	113.20
	損益分岐點手數料率	6.09	6.69	7.30	7.92
광 주 A	損益分岐點率	87.17	94.74	102.32	109.89
	損益分岐點手數料率	6.10	6.63	7.16	7.69
대 전 A	損益分岐點率	89.01	95.50	101.99	108.48
	損益分岐點手數料率	5.34	5.73	6.12	6.51
울 산 A	損益分岐點率	63.09	70.05	77.01	83.98
	損益分岐點手數料率	4.42	4.90	5.39	5.88
청 주 A	損益分岐點率	104.27	114.84	125.40	135.97
	損益分岐點手數料率	6.25	6.89	7.53	8.16
平 均	損益分岐點率	81.14	89.30	97.46	105.65
	損益分岐點手數料率	5.18	5.70	6.23	6.75

* 1992年度 一般都賣業의 産業平均 賣出額營業利益率은 1.5%임.

까지 있으며, 평균 약 5.18%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目標營業利益率을 總賣出額의 10%로 할 경우 역시 5% 일 때와 마찬가지로 청주 A의 1개의 지정도매법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현재의 매출액이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초과하고 있으며, 이 때의 損益分岐點率과 手數料率은 각각 89.30%와 5.70%이다.

또한 目標營業利益率을 15%로 할 경우 10개의 분석대상 지정도매법인 중 5개 지정도매법인의 매출액이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초과하지 못하고 있으나 평균 損益分岐點率과 手數料率은 각각 97.46%와 6.23%로 현재의 매출액이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초과하고 있으며, 현재의 上場手數料率의 최고한도인 7.00% 초과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目標利益率을 20%로 할 경우 3개 지정도매법인의

현재 매출액이 損益分岐點 賣出額을 초과하고 있으며, 전체 평균으로 보면 損益分岐點率과 手數料率이 각각 105.65%와 6.75%로 나타나고 있다.

3.3. 適正料率體系 方向

공영도매시장의 각종 使用料와 手數料의 法定最高限度는 施行規則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法定最高限度의 범위내에서 징수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징수자별로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諸料率의 適正水準은 전체 징수자와 支拂者의 입장에서 法定限度料率이 적정한지의 여부만 검토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도매시장에서의 諸料率은 징수자에 있어서는 收入水準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며, 支拂者의 입장에서는 支拂水準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 서로 상반된 입장에 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청과물 지정도매법인이 출하자에게 징수하는 委託上場手數料의 現行料率과 損益分岐點 手數料率을 보면 法定最高限度는 7.00% 인데 비해 現料率은 분석대상 지정도매법인의 평균이 5.92%이며, 損益分岐點料率은 4.38%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現料率과 損益分岐點料率과의 차이는 1.54%나 되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현상은 手數料收入이 損益分岐點 收入을 훨씬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公共投資로 개설된 都賣市場에서 지정도매인이 어느 정도 이상의 거래량만 취급하면 일정 수준 이상의 安定的인 收益을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도 될 것이다. 그러나 지정도매법인도 기업활동을 하는 사업체이기 때문에 營業目標가 그들의 賣出額水準을 損益分岐點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일정 수준 이상의 營業利益을 실현해야 될 것이다. 그러나 분석 결과 각 지정도매법인의 現料率과 損益分岐點料率이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정도매법인별 委託上場手數料率의 適正水準을 결정하는데는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지정도매법인별로 適正料率水準을 결정할 수는 없으나 몇 가지 기준을 정하여 현재의 料率水準과 調整方向에 대해 검토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靑果物 上場手數料率에 대해서 보면 <표 5>에서 보는 것과 같다. 여기서 보면 料率水準에 대한 評價基準으로 크게 現在料率과 法定料率을 고려하였다. 현재 각 지정도매법인이 수취하고 있는 料率을 기준해서 보면 현요율은 損益分岐點을 실현시키는 데에 필요한 料率보다 1.54%나 높다. 그러나 지정도매법인이 營業目標가 損益分岐點 賣出額을 실현시키는 것이 아니고 賣出額 중 일정 비율의 營業利益을 올리는 것을 가정하고 그 수준을 5%라고 하면 현재의 상장수수료율은 0.75%가 높기 때문에 0.75%의 인하 가능성이 발생한다.

그러나 각 지정도매법인별로 인하가능 수준이 다를 뿐만 아니라 매출액 중 5%가 적정 目標利益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률적인 조정은 불가능하다. 단지 인하 가능성이 있다면 현재의 요율 수준은 그대로 두고 출하자가 부담하는 다른 料金을 지정도매법인이 부담해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指定都賣法人의 收入은 전부 출하자의 委託上場手數料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지정도매법인의 경영이 양호하여 手數料率의 引下可能性이 있다면 당연히 生産出荷者의 負擔을 감소시

表 5 青果物 上場手數料率 分析

단위: %

指定 都賣人	現料率(A)基準			法定料率(B)基準		
	A-分岐點 料率	A - 5% 目標利益料率	A - 下車費 料率	B - 分岐點 料率	B - 5% 目標利益料率	B - 下車費 料率
서울 A	2.07	0.90	3.45	4.28	3.11	5.66
서울 B	1.49	0.11	3.30	3.88	2.44	5.69
서울 C	1.65	0.43	3.66	3.77	2.55	5.78
서울 D	1.00	-0.36	3.68	3.01	1.65	5.69
대전 A	1.05	0.66	4.59	2.05	1.66	5.59
울산 A	3.07	2.58	5.76	3.07	2.58	5.76
청주 A	0.37	-0.25	4.44	1.37	0.75	5.44
대구 A	2.17	1.63	5.83	2.17	1.63	5.83
대구 B	1.13	0.91	5.55	1.13	0.91	5.55
광주 A	1.43	0.90	5.64	1.43	0.90	5.64
平均	1.54	0.75	4.61	2.62	1.82	5.66

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원활한 도매시장 운영을 위한 物量 確保는 지정도매법인의 기본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물량 확보와 관련된 비용은 당연히 法人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위탁상장수수료 외에 출하자가 부담하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下車料이다. 도매시장의 下車料를 추정한 자료에[4] 의하면 거래금액의 평균 약 1.31%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手數料率水準인 5.92%에서 下車費料率인 1.31%를 부담하면 4.61% 만큼 지정도매법인의 수입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4.61%는 각 지정도매법인이 5%의 目標利益率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평균 수수료율인 5.18%보다 0.57% 낮은 것이다.

그러나 一般都賣業의 産業平均 賣出額營業利益率이 1.5%인 것과 經營合理化 및 奬勵金制度의 폐지를 고려하면 현재의 上場手數料率下에서는 出荷者가 부담하는 下車料의 전부를 지정도매법인이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지정도매법인이 실제 수취하는 料率을 現料率이 아닌 法定料率로 가정하면 지정도매법인이 荷役人力을 직원화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커진다. 만약 각 지정도매법인이 上場手數料率을 法定限度로 받는다면 損益分岐點料率보다는 평균 2.62%가 높아 營業利益이 매우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정도매법인의 適正營業利益率을 總賣出額의 5%라고 가정하면 法定限度料率은 適正營業利益率을 충족하고도 1.82%가 남는다. 이 경우 1.82%는 도매시장의 平均 下車料率인 1.31%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4] 성배영 외, 「農産物 都賣市場의 效率的 去來方式과 適正料率體系에 관한 硏究」, 1993

그러나 각 지정도매법인의 現上場手數料率과 損益分岐點料率이 경영상태에 따라 달라서 手數料率의 調整可能性과 調整方向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法定料率의 한도내에서 手數料率의 調整과 適正水準의 결정은 각 지정도매법인이 스스로 결정해야 될 것이다.

4. 要約 및 結論

농수산물 法定都賣市場에서 流通參與者간에 授受되는 諸料率에는 대체로 使用料와 手數料가 있다. 사용료에는 都賣市場使用料와 施設使用料가 있으며, 수수료에는 委託上場手數料와 仲介手數料가 있다. 그리고 사용료와 수수료 외에 도매시장에는 각종 奬勵金과 기타 하역비, 청소비, 제작업비 등 각종 명목의 비용이 있다. 그리고 이들 사용료와 수수료의 諸料率은 法에 의하여 最高限度가 규정되어 있으나 징수자별로 요율수준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法定料率과 實際料率간에는 많은 차이가 나고 있다.

한편 도매시장의 料率水準分析에서의 분석대상 요율은 공영도매시장의 青果物 委託上場手數料率로 하였다. 이것은 委託上場手數料率이 도매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율로서 생산출하자의 受取價格水準은 물론 지정도매법인의 經營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요율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부류와 他料率에 대한 이용 자료 수집의 제약으로 분석대상 요율을 위탁상장수수료로 한정하였다.

分析結果 현재의 위탁상장수수료율 수준은 지정도매법인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手數料收入이 損益分岐點 收入을 훨씬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과물 지정도매법인별로는 각각 현재의 賣出額에서 損益分岐點率과 損益分岐點 手數料率이 큰 차이가 나고 있지만 현재의 매출액 수준에서 수수료의 法定限度인 7.00%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총매출액의 약 20%까지의 目標營業利益率을 실현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분석대상 10개 지정도매법인의 현재의 평균수수료율인 5.92%로는 약 10% 조금 넘는 目標營業利益率을 실현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公營都賣市場의 청과물 지정도매법인은 도매시장설립 및 운영상의 특수성으로 都賣會社의 설립과 함께 제도적으로 安定的인 收益性을 보장받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영도매시장 지정도매법인은 일정률 이상의 營業利益 추구와 함께 유통비용 절감이나 유통효율성제고와 같은 公益性提高에도 일정한 역할 부담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현요율 수준의 引下方向으로의 再調整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料率水準에서 他流通參與者 특히, 生産出荷者가 부담하는 상장수수료 외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분석 결과 지정도매법인별로 現料率과 損益分岐點料率이 각기 다를 뿐만 아니라 지정도매법인의 영업목표가 일정 수준 이상의 營業利益을 실현시켜야 하기 대문에 전체 지정도매법인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수

수료율의 適正水準을 결정하는데는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지정도매법인별 적정요율 수준은 결정할 수 없으나 몇 가지 조건하에서 현재의 料率水準의 調整方向에 대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위탁상장수수료의 현요율 수준과 法定料率을 고려하고 각 지정도매법인의 適正營業利益率을 總賣出額의 5%라고 가정하면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현재의 수수료율하에서 지정도매법인이 생산출하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현재와 같이 생산출하자가 비용을 부담하되 上場手數料率 수준을 인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분석은 分析資料의 제한으로 정태적 분석밖에 될 수 없으며 부류별 각 지정도매법인의 損益分岐點과 手數料率은 經營環境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각 지정도매법인의 現上場手數料率과 損益分岐點料率이 경영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手數料率의 調整可能性과 調整方向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法定料率의 범위내에서 手數料率의 調整과 適正水準의 결정은 각 지정도매법인이 스스로 결정해야 될 것이다. 다만 荷役費를 포함한 출하자가 부담하는 市場內 諸費用의일정 비율 이상을 지정도매법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法的 規定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參 考 文 獻

農林水産部・農水産物流通公社, 「農水産物都賣市場 參考資料」, 1992. 12.

朴廷寔・申東領, 「經營分析」, 茶山出版社, 1992.

서울特別市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 「'92 經營實績報告書」, 1993. 3.

成培永, "農産物 都小賣市場 流通改善," 「食品流通硏究」, 1992. 8.

成培永 外, 「農水産物 都賣市場의 效率的 去來方式과 適正料率體系에 관한 硏究」, 韓國農村經濟硏究院, 1993.

-----, 「主要 靑果物의 市場流通體系 改善方向」, 韓國農村經濟硏究院, 1992.

柳哲昊 外, 「畜産部類 都賣市場의 手數料 徵收方法 및 料率에 대한 硏究」, 韓國農村經濟硏究院, 1988. 10.

韓國農水産物都賣市場協會, 「農水産物流通 및 價格安定에 관한 法令集」, 1990. 1.

農林水産省 食品流通局 市場課, 「都賣市場の現狀と課題」, 1991.

都賣市場法硏究會, 「市場流通要覽」, 大成出版社, 1988.